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

☎ 137-07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신36 / TEL (02) 582-4106 / FAX (02) 588-4454

문서번호 전형 01110-158
 시행일자 1992. 9. 23

(경유)
 수신 각인장조
 참조
 제 목 '92년도 제2회 방화관리자 자격시험 시행 취소공고

9
1992
2/2

취급		시 정
보존		
원 장	전 결	
교수부장	공감	법무담당관 김자
기획과장		지도과장 김경리계장 (기)
기안	전형설령	(92.9.우정근) 협조

검인
1992.9.23
중

< 제 1 안 >

수 신 내부결재
 제 목 동 건

1. 지도 02412 -1155 (92. 9. 21)호와 관련입니다.
2. '92.10.24 시행예정으로 기하공고(서울특별시공고 제1992-98호 92. 4.22) 한바있는 제2회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은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험시행을 별첨 공고(인)과 같이 취소 공고코자 합니다.

가. 관련개정법령 : 소방법시행령 제9조 및 동시행규칙 제 82조, 부칙제3조
 나. 개정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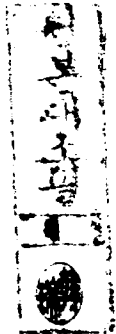
○ 종전 시.도지사가 실시하던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은 폐지되고
 내무부상권이 실시하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을 신설

- 정 부 1) 공고(인) 1부
 2) 관련법령사본 1부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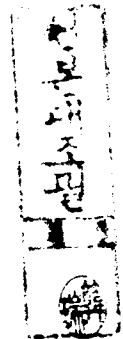
< 제 2 안 >

수 신 : 서울특별시청
 참 조 : 공보관
 제 목 : 신문공고 의뢰

1. '92.10.24 시행 예정이던 제2회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은 소방관련 법령개정 으로 동자격시험이 취소되었기 공고(인)을 송부하오니 신문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- 가. 계(新聞) : 서울신문
 - 나. 공 고 일 : 92. 9. 25 (금)
 - 다. 게재규모 : 1단 X 10 Cm
 - 라. 예산과목 : 교육, 공무원교육원, 시험관리, 수용비및 수수료
 - 마. 소요예산 : 341,000원 (31,000원 X 1단 X 10 Cm X 1.1)
 - 바. 지급방법 : 신문광고후 청구에 의거 지출
- 별 부 1) 공 고 (인) 2 부 끝

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

공 고 (인)

공고
1992. 9. 27
1992. 9. 27
1992. 9. 27

서울특별시 공고 제 1992-242호

1992년도 제2회 방화관리자 자격시험 시행 취소공고

소방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'92. 10. 24 시행하기로 기하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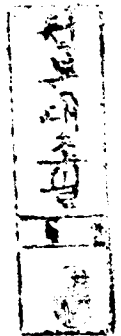
(서울특별시 공고 제 1992-98호, '92. 4. 22일자 서울신문) 한바 있는

'92년도 제2회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은 소방법 시행령및 동 시행규칙 개정으로

인하여 동 시험시행이 취소되었기 공고합니다.

1992. 9. 27

서울특별시장



방화관리자(자격시험에 관련된 소방법시행령, 시행규칙 대비표)

개 정 전	개 정 후
<p>시행령 제8조 (방화관리자의 선임)</p> <p>1.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수료증을 수료하고 그 자격을 인정 받은 자</p> <p>3의2. 의용소방대원 또는 청원소방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</p>	<p>시행령 제9조 (방화관리자의 선임)</p> <p>1.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호 - 7호 생략</p>
<p>시행규칙 제64조 (방화관리업무등의 강습)</p> <p>①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은 도지사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실시한다.</p> <p>② 강습은 연 2회 실시한다.</p>	<p>시행규칙 제82조 (방화관리업무등의강습실시)</p> <p>①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실시한다.</p> <p>② 강습은 연 2회 실시한다.</p>
<p>시행규칙 제69조 (방화관리자등의자격시험)</p> <p>① 방화관리자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강습을 받은자가 자격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기간은 당해 강습수료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.</p>	<p>— 삭제 —</p>
<p>시행규칙 제72조 (수첩의 교부)</p> <p>① 도지사는 다음의 경우에 방화관리자 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때 2. 생략 3. 수첩을 교부받은자가 분실, 오손등의 사유로 재교부신청을 한 때 	<p>시행규칙 제86조 (방화관리자수첩등의교부)</p> <p>①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제82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에관한 강습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방화관리 수첩을 교부하고 교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, 보관하여야 한다.</p>
	<p>부칙 제3조 (방화관리자수첩에관한경과조치)</p> <p>①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,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방화관리자 수첩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장으로 부터 그 수첩을 교부받은것으로 본다.</p> <p>②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 1월1일 이후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은 사람중 방화관리수첩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.</p>